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12. 1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9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2012.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의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치매 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변경

- 기존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로 변경

나.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 계약기간 연장 조항인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조항 삭제

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조항 신설

- 수탁기관 선정기준·방법 등 명시(공개모집)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 규정 명시(여성
위원 40% 이상)

라. 협약내용 공증이행 조항 신설

마.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
- 「지역보건법」 제9조, 제24조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8.4)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민간위탁운영의 관리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 규정 중 「치매관리법」이 제정(2011. 8. 4 제정, 2012. 2. 5 시행)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 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로 변경하고
- 안 제4조제3항에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수탁 기관 선정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4조제4항과 제5항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과 협약내용을 공증 이행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고
-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

-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의거,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함
 - 안 제6조제5항에 수탁자의 의무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민간위탁 관리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3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농어촌등보건의를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를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가정·사회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

제24조(권한의 위임등)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